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01호

촉탁변호사 및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 공고

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「건강보험심사평가원」에서는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

직 종	근무지역	인 원	자 격 기 준
총 계		4명	-
촉탁 변호사	본원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변호사법」 제4조 각 호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- 단,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
	서울 본부	1명	
법률사무종사 변호사	본원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우리원에서 실무수습 받기를 희망하는 자
공통사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▪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군필, 미필, 면제 및 임용(예정)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▪ 임용(예정)일('24. 6. 17.)부터 근무 가능한 자 ▪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▪ 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▪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원 「촉탁변호사 운영지침」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,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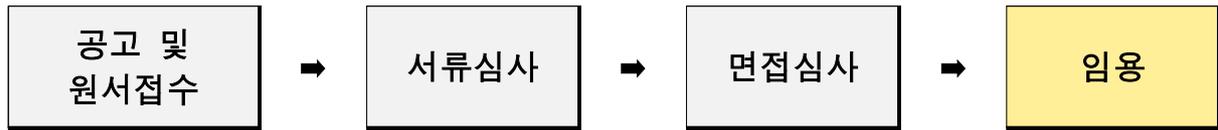
* 수행업무, 관련 자격 등은 [별첨1] 직무설명자료 참고

**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, 직종·근무지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'부적격' 처리

2. 근무조건 등

구 분	촉탁변호사	법률사무중사 변호사
고용형태	계약직(기간제 근로자)	
계약기간	임용일로부터 '24. 12. 31. 까지 ※ 「촉탁변호사 운영지침」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음	임용일로부터 6개월
근무시간	주 5일(40시간), 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포함)	
근무지역	본원(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) 및 서울본부(서울특별시 송파구) ※ 최종합격자는 당초 입사 지원한 지역(원주, 서울)에서 근무하되, 재직 기간 중 기관 내·외부 상황 및 인력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	
보수	우리원 내부규정에 따름 (경력기간에 따라 산정) ※ 변호사 자격취득 이후 변호사 경력을 고려하여 산정	월 2,500,000원 이내 (4대 보험료, 제세공과금 등 포함)
주요 수행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·대리 ○ 우리원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 ○ 법률자문 및 질의에 대한 검토·회신 ○ 법령교육, 현지조사 등 사업지원 및 기타 법무 관련 업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률자문 및 질의에 대한 검토·회신 보조 ○ 민사·행정소송 등 소송업무 보조 ○ 임직원 법규교육 지원 ○ 내부규정 제·개정 지원 등

3.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



구 분	일 정	비 고
공고 및 원서접수	· 4. 22.(월) ~ 5. 7.(화) 18시	· 우리원 홈페이지 등 공고 · 채용 홈페이지 접수
서류심사	· 5. 8.(수) ~ 5. 13.(월)	-
서류심사 결과발표	· 5. 14.(화) 17시 이후	· 적격자 전원 선발 · 개별안내
면접심사	· 5. 27.(월)	· 우리원 본원 등
증빙서류 제출	· 5. 27.(월) 17시 ~ 5. 29.(수) 18시	· 채용 이메일 제출
최종 합격자 결과발표	· 6. 4.(화) 17시 이후	· 개별안내 · 예비합격자 운영 - 6. 10.(월) 18시 까지
임용(증빙) 서류 제출	· 6. 4.(화) 17시 ~ 6. 7.(금) 18시	· 채용 이메일 제출
임용	· 6. 17.(월)	-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

4. 공고 및 원서접수

- 기간: 4. 22.(월) ~ 5. 7.(화) 18시
- 방법: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or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(방문 또는 이메일·우편접수 불가)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< 블라인드 채용 안내 >

- ▶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,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(MM. DD.) 입력
- ▶ 편견요소(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)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.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

- 자격요건 및 근무지역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
- 자격(면허) 사항은 자격(면허)명칭과 시행처, 자격(면허)번호,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
 - 자격(면허)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(다빈도오류: 0, 0 등)
 - ‘사법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’의 경우 자격(면허)번호에 “없음” 입력
-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
 - 변호사 자격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
 -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
 - 법률사무 종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작성 시 고용구분을 “기타”로 선택

2.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「제출」 버튼을 누르고, 제출완료 여부 확인

3. 접수 마감시각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·삭제 및 제출이 불가함

4. 입사지원은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직종·근무지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‘부적격’ 처리

(예시) 본원과 서울본부 중복지원, 촉탁변호사와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중복지원 모두 ‘부적격’ 처리

5. 서류심사

- 평가내용: 지원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
- 합격자 선발: 적격자 전원 선발

6. 면접심사

- 면접대상: 서류심사 합격자(신분증* 필참)
 - * 주민등록증(발급신청확인서 가능)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 등
- 면접일자: 5. 27.(월)
- 면접장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(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) 등
- 면접방법: 다대일(면접위원 다수/면접자 1명) 집중면접을 통해 직무역량, 직무 관련 지식 등 조직적합성 및 인성 종합적 평가
- 합격자 선발: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
 - *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

7. 증빙서류 제출

- 대상: 면접심사 응시자 * 증빙서류 목록 [붙임3] 참조
- 방법: 증빙서류 스캔 후 이메일(insa2@hira.or.kr) 제출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기간: 5. 27.(월) 17시 ~ 5. 29.(수) 18시
- 유의사항
 -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됨
 - ※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(발급 유효기간)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, 블라인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처리하여 제출
 - ※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는 블라인드 처리하되,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
- 최종합격자는 최종 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-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8. 우리원 채용 관련 제도 안내

□ 예비합격자 운영

- 운영기한: 임용일 1주 전(6. 10.(월) 18시)까지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번호순 순차 임용
- 임용포기자 및 추가 합격자 관련 상황별 조치방법

구분	임용포기자	추가 합격자
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내	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, 차순위자 임용	임용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, 최초 통화 시도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연락 불가능한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차순위자 임용
예비합격자 운영기한 종료 후	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	-

- 채용서류 반환 *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 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
 - 다만, 채용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에 파일로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
- 장애인 편의제공 *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
 -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 가능
 -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전신청 하여야 함
 - ※ [별첨2] ‘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’ 참조
 - 이후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

-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
 -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
 - 신청기간: 6. 4.(화) ~ 6. 18.(화)
 - 접수방법: 이메일(insa2@hira.or.kr) 접수

<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>

- ▶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와 관련한 사항
- ▶ 지적재산권(외부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- ▶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※ 전형별 평가기준, 개인별 취득점수(순위)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

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

- 우리원은 “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”으로,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

<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>

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(이하 이 장에서 “취업심사대상자”라 한다)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(이하 “취업심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8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(이하 생략)

9. 기타 사항

- (중복지원 금지) 입사지원은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, 직종·근무지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모두 ‘부적격’ 처리
- (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)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각종 경력조회 등 임용(증빙)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(중빙) 서류 허위·착오 기재, 임용 결격사유,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조회 등 임용(중빙)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(채용 관련 안내사항 숙지)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or.kr>)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 - ※ SMS, E-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,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
- (채용청탁 금지)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- (영리업무 등 겸직금지)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
 - ※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
- (공지·문의) 채용 담당자(☎ 033-739-2225) 문의 ※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-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안내 예정

2024. 4. 22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붙임1	임용 결격사유 [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]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6의4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붙임2	우대사항
------------	-------------

구분	항목	내용	우대사항
사회 형평적 채용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취업지원 등) 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(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% 또는 10%) 	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% 또는 10%를 부여하되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
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*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, 중증장애인의 경우 ‘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’ 발급이 가능해야 함 	면접전형 만점의 5~10% (경증5%, 중증10%)

※ 우대사항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(24. 5. 7.)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

※ 우대사항 중복 시 상위 가점 1개만 우대 적용

붙임3	증빙서류 목록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* 발급유효기간, 제출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잘못된 서류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
구분	등록 서류	등록 대상	발급 유효기간
자격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촉탁변호사) 1가지 필수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- 판사 또는 검사 임명장 -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- 변호사 등록증(등록 증명원) 	지원자 전원 (해당 자격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)	기한없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법률사무종사변호사) 1가지 필수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- 변호사 등록증(등록 증명원) ※ 원서 접수마감일('24. 5. 7.) 기준 취득 분까지 인정 		
경력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 받은 경우 '법률사무 종사 확인서' 또는 '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이수 확인서'로 대체 가능(연수·종사기간 명시) ※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(홈택스 발급) ※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필수 	경력사항 입력자 (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기간이 증빙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력증명서 - 기한 없음 ▪ 재직증명서 - 5. 7.(화) ~ 5. 29.(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(2가지 필수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¹⁾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²⁾ - 소득금액증명³⁾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[발급처] 1)근로복지공단 2)국민건강보험공단 3)국세청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친 자는 '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이수 확인서'로 대체 가능(연수기간 명시) 		5. 7.(화) ~ 5. 29.(수)

구분	등록 서류	등록 대상	발급 유효기간
사회 형평적 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제출처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으로 발급) ※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, 제대군인 확인서 등 	취업지원 대상 해당자	5. 7.(화) ~ 5. 29.(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	장애인 해당자	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성: 필수 제출 여성: 개명자 또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	5. 7.(화) ~ 5. 29.(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	해당자에 한함	기한없음